

2020년도 2/4분기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0. 9.

감사위원회

# 1. 개요

## 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 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□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0. 4. 1. ~ 6. 30.(2020년 2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  
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## □ 접수결과

- 2020년 2분기 총 173건 접수

[표 1] 2020년 2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4월	5월	6월
공직자비리신고	91	21	33	37
공 익 신 고	81	14	33	34
부 정 청 탁	1	-	-	1
퇴직공무원특혜	-	-	-	-
합 계	173	35	66	72

## 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### 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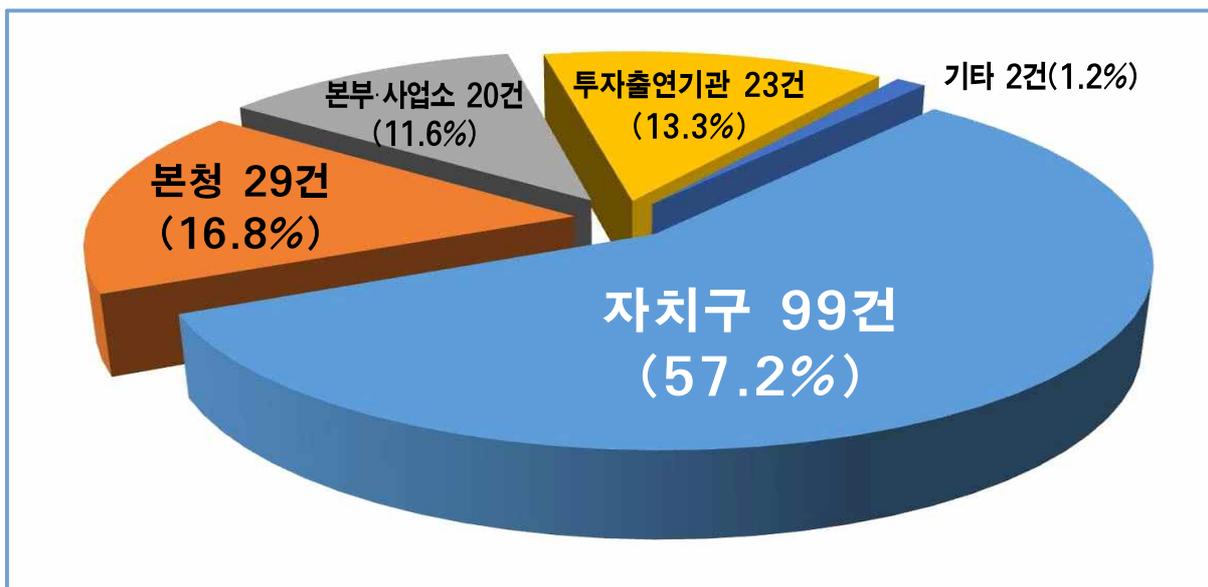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73 (100%)	161 (93.1%)	4 (2.3%)	8 (4.6%)

\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### 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99건(57.2%)으로 가장 많았음
  - 공동주택관리법/식품위생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45건
 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54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29건(16.8%), 본부/사업소 소관 20건(11.6%)
 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18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1건 등 접수
 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7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3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23건(13.3%), 기타 2건(1.2%)
 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1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2건
  - 기타 2건은 시 소관사무가 아닌 건



# 3. 공익제보 분류

## 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73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13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13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73 (100%)	71 (41.0%)	42 (24.3%)	60 (34.7%)

\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### 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/li> <li>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<b>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</b>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/li> <li>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/li> </ol>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<b>467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b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## 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### □ 공익제보 해당 113건 세부내역

#### ○ 부패신고 해당 71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부 정 청 탁	자 치 구	3	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
	기 타	1	
	소 계	4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9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부·사업소	6	
	자 치 구	24	
	투자출연기관	8	
	소 계	47	
불 공 정 행 위	본부·사업소	1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자 치 구	5	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7	
복 무	본 청	4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본부·사업소	3	
	자 치 구	1	
	소 계	8	
위 탁 및 보조금 단 체 관 련	본 청	3	시·구의 위탁시설이나 보조금시설의 부당행위 의혹 관련
	자 치 구	2	
	소 계	5	
총	계	71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## ○ 공익신고 해당 42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감염병 예방법	1	자치구	취하1	유형업소 집합금지 위반
개인정보보호법	2	본부사업소	조치1	민원인 개인정보 노출
		투자출연	해당없음1	개인정보 제공
건축법	3	자치구	진행중3	불법 건축물 신고 등
공동주택관리법	3	자치구	권한없음1, 진행중2	장기수선충당금 부당사용 등
공인중개사법	1	자치구	수사의뢰1	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
노인복지법	1	본청	해당없음1	노인요양원 부적정 행위
도로법	1	자치구	개선1	거리 노점상 단속 요청
도시공원법	1	본부사업소	증거불충분1	공원 내 불법 텐트 대여
방문판매법	1	본청	개선1	사기 통신광고
사회복지사업법	2	자치구	취하1, 진행중1	복지관 채용비리 등
산림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나무벌목 등
식품위생법	1	자치구	권한없음1	생수 내 이물질 신고
아동복지법	2	자치구	권한없음1, 기타1	아동학대 처리과정 미흡
약사법	1	자치구	개선1	불법 약 배달행위 신고
영유아보육법	1	자치구	진행중1	어린이집 내 위법 행위
자연공원법	1	자치구	조치1	공원 내 불법건축
주차장법	1	자치구	조치1	주차장 불법용도 사용
주택법	16	자치구	개선16	아파트 하자에 따른 감사요청
폐기물관리법	1	자치구	개선1	건축자재 무단적치
할부거래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카드사의 부당행위 신고
총 계	42		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## 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0.8.14. 현재)

### 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62		종결 59					진행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기타		
173	8	54	41	5	2	5	6	34	18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### 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	물품구매 이유로 허위출장 의혹 신고	감사위원회	14명/33건 환수 660천원
2	부패	시립 시설장의 근무태만 등	본청 소관과	징계요구(시설장)1, 주의3
3	부패	공무직 근무지 이탈 등 복무위반	감사위원회	징계요구2
4	부패	구립체육시설 추가 수강료 요구	자치구	주의2, 개선1
5	공익	민원인 개인정보 노출	감사위원회	조치(훈계)1
6	공익	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	자치구	수사의뢰1
7	공익	공원내 불법건축물 등 신고	자치구	철거조치1
8	공익	주차장 불법 용도 사용	자치구	원상회복명령1